

**부속서 VII의 부록 2**  
**아이슬란드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 수평적 양허</b>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p>3) 모든 외국환송금은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보고되어야 함.</p> <p>서비스 공급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아이슬란드 기업에의 투자는 상무부에, 비거주자에 의한 아이슬란드 증권에의 투자는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p>	<p>3)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 사무소, 중앙 관리기관 또는 주요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의 경제와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음을 보인다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내에 제3국 기업에 의해 설립된 지점 또는 대리점에도 부여됨.</p>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조직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상무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함.</p> <p>비거주자는 임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법무부의 허가 없이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p>	<p>유한책임기업의 설립자의 과반수는 상무부에 의해 이러한 조건을 면제받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여야 함.</p> <p>모든 국내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상무부에 의해 이러한 요건 면제 받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여야 함. 다른 유럽 경제지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p> <p>아이슬란드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중 적어도 1명은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이거나 공인회계 회사에 합법적으로 전속된 자여야 함.</p> <p>비거주자는 단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통상의 소유권만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수력, 지열 에너지 등 의 이용권 등 이례적인 권리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비거주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모든 분야: 인력의 이동	<p>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p> <p>4) 아이슬란드가 노동시장심사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허용해야 하는 기업내전근자와 같은 다음의 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을 제외하고는 약속안함.</p> <p>임원: 계약에 포함된 조직의 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를 세우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자. 임원은 반드시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p>	<p>비거주자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와 장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은 법무부에서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까지 유효하지 않음.</p> <p>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p> <p>4) 시장접근 항목에 기재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고위관리자: 계약에 포함된 조직 및 그 부서를 지휘하고, 직원을 감독, 통제하고 또한 고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상의 조치를 추천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의 서비스 공급기능을 책임지는 고위의 수준에 있는 자</p> <p>전문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지식, 또는 조직의 서비스, 연구장비, 기술 또는 관리에 필수적이거나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조직 내의 자</p> <p>서비스 판매자: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이러한 판매활동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모든 분야: 보조금(보조금의 정의문제는 GATS 제15조에 따른 협상의 맥락에서 결정될 것임.)	<p>3) 제한 없음</p> <p>4) 제한 없음</p>	<p>3) 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아이슬란드 영역 내에 설립되는 법인에 한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조금은 약속 안함.</p> <p>4) 오직 자연인에게만 이용 가능한 보조금은 아이슬란드 시민에게 제한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II. 분야별 구체적 약속</b>			
<u>1. 사업 서비스</u>  <u>A. 전문직 서비스</u>  법률서비스(CPC 861의 일부에만 적용)	<p>- 모국법에 대한 법률자문</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이슬란드의 총변호사협회 회원은 아이슬란드 법정에서 고객을 대표할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외국법 자문</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 1),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이슬란드 사법시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아이슬란드 공인회계사 시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 요구	
(c) 세무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건축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g) 도시계획, 조경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i) 수의료 서비스(CPC 9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농촌지역의 수의사의 수는 제한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이슬란드 언어구사능력이 요구됨. 4) 아이슬란드 언어구사능력이 요구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컴퓨터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비자문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소프트 웨어 시행 포함)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보수 및 수리 서비스 (CPC 845) - 기타 컴퓨터 서비스 (CPC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u>C. 연구개발서비스</u> (a) 자연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연구장비 수입에 면허 필요. 아이슬란드 자연사협회의 허가 없이는 자연사 표본 국외 반출 금지 3),4) 제한 없음.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고고학 박물관회의 (Museum Council)의 허락 없이 국외로 수출할 수 없음. 3), 4) 모든 고고학 연구는, 아이슬란드인이 견 외국인 연구자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고고학 보존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C) 종합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D. 부동산서비스</b>			
(a) 자기소유 또는 임차권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CPC 8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예금 또는 고객에게 야기된 손실을 부담할 책임보험. 부동산 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면허는 개인에게 허가된 것임.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4) 주거용 빌딩, 토지판매 서비스 및 그 밖의 부동산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한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 거주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서비스  (CPC 82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예금 또는 고객에게 야기된 손실을 부담할 책임보험. 부동산 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면허는 개인에게 허가된 것임.</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4) 주거용 빌딩, 토지판매 서비스 및 그 밖의 부동산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한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 거주 필요</p>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 서비스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임대서비스는 유한책임회사(임대기업) 또는 등록된 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임대회사 이사회의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거주자여야 함. 관리자는 아이슬란드 거주자 또는 북유럽 국가의 시민이어야 함</p> <p>4) 제한 없음.</p>	
(a) 선박관련(CPC 8310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선박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선박이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어획선에는 그 이상의 국적제한이 있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한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항공기가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기타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83102+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자동차 임대서비스는 거주요건이 있음. 4) 자동차 임대서비스는 거주요건이 있음	
(d) 기타 기계 및 장비임대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e) 기타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F. 기타 사업서비스</u>			
(a) 광고 서비스(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관련(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경영컨설팅서비스(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f) 농업, 수렵, 임업 부수서비스 (CPC 88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885, 단 88442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k) 인력배치 및 공급서비스기타 (CPC 8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서비스 (CPC 633+8861-8866;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o) 빌딩청소서비스(CPC 8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p) 사진서비스(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q) 포장서비스(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r) 인쇄 및 출판(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문 또는 잡지의 아이슬란드 영역 내 출판은 거주 요건 있음. 편집자에 대한 거주요건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s) 국제회의서비스(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u>C. 통신서비스</u>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c) 회로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d) 텔레스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o) 기타 - 모바일 및 개인통신 서비스와 시스템  부가서비스 <sup>38)</sup>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DB 검색, 전자적데이터 교환(EDI), 코드 및 프로토콜변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음성전화, 전신, 텔레스, 패킷 및 회선 교환 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라디오 전화, 페이징 및 위성 서비스 제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u>			
A. 일반 빌딩 건설 작업(CPC 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일반 민간엔지니어링 건설작업 (CPC 5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설치 및 조립작업(CPC 514+51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4. 유통서비스</b> (단, 무기류, 주류, 담배, 의약품의 유통은 제외)			
A. 중개서비스 (CPC 6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도매서비스 (CPC 6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소매서비스 (CPC 631+632+6111+6113+61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프랜차이징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A. 폐수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기타 (CPC 940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A.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p>(i) 아이슬란드는 “금융서비스 양해각서(Understanding)”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함.</p> <p>(ii)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는 양해각서의 B.3과 B.4 단락에 명시된 의무의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에 구속됨.</p>	<p>1) 직접보험의 공급은 아이슬란드 보험 사업자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허용됨.</p> <p>보험중개인 서비스 공급은 상무부에 의해 허가 받은 보험 중개인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허가받은 보험브로커들에게만 허용됨.</p> <p>2)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사업자는 아이슬란드에서 지점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승인을 얻어야 함.</p> <p>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보험회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통지해야 함. 감독당국은 그 소유(회득)가 그 회사의 전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면 소유 또는 소유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보험회사 설립자중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거주자 또는 아이슬란드에 등록된 법인,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p> <p>보험회사의 관리자와 이사회 구성원은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야 함.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은 거주요건이 면제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유럽경제지역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지점사무소는 거주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함.</p> <p>보험중개인은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거나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시민 또는 법인이어야 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4)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은 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관련 회사는 아이슬란드 금융감독당국(FME)의 허가를 조건으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p> <p>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관련 회사는 유한책임 회사로만 설립되어질 수 있음</p> <p>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공공으로부터 예금과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지님</p> <p>증권의 공개 발행은 증권회사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국내금융기관은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비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된 서비스 공급자의 계정잔액을 알려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신용기관의 설립자는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과 법인은 동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p> <p>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및 유식(UCITS)과 관련한 회사의 관리자와 위원회 과반수는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야 함.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은 동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상무부장관은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에게 동일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공급자는 상무부에 아이슬란드에서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의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는 아이슬란드에서의 증권에 대한 비거주자의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함.</p> <p>4)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u>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u></p> <p><u>A. 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터링 : 음식조달 서비스 포함)</u> (CPC 641-643)</p> <p><u>B.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u> (CPC 7471)</p> <p><u>C. 관광 가이드 서비스</u> (CPC 747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산에 의해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책임보험료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허가 조건으로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 4) 허가 조건으로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4) 허가 조건으로 관리자의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동 직업에 대한 권리는 현지 거주 관광 가이드에게만 부여됨. 비 거주 관광가이드에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취업허가 부여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b>			
<b>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 밴드, 서비스 서비스 포함) (CPC 9619)</b>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b>B. 뉴스제공업 (CPC 962)</b>	1),2),3) 관리직에 대한 접근은 권한 있는 당국의 임의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자에 대해 거주 요건이 부과됨.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C.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 비스 (CPC 963)</b>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b>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 스 (CPC 964)</b>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도박, 슬롯머신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자격이 요구됨. 프로 복싱은 불법이나 아마추어 복싱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u>A. 해운 서비스</u>			
국제해운(화물 및 승객)(CPC 7211 및 7212 국내운송 1) 포함)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a) 아이슬란드 국기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등록된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2): 제한 없음</p> <p>4)(a) 선박의 승무원: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위의 모드 3(b)에 정의된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고용된 핵심인력: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약속 안함.</p> <p>(b) 제한 없음.</p> <p>4) (a) 약속 안함.</p> <p>(b) 약속 안함.</p>	
<u>해운보조서비스</u>			
해상화물처리 서비스 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한 없음.</p>	
저장 및 창고보관 서비스(CPC 742); 통관서비스 4);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 5)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한 없음.</p>	

\* 동 공급모드에 대한 약속은 실행가능하지 않음.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대리점 서비스 6); 화물 주선 서비스 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서비스 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해상운송업자들의 요구에 따른 보조서비스			<p>다음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의하여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선</li> <li>2. 예인 보조</li> <li>3. 선용품 공급, 급유, 급수</li> <li>4. 폐기물 수거, 밸라스트 폐기물 처리</li> <li>5. 선석배정 서비스</li> <li>6. 항행보조</li> <li>7. 통신, 급수, 전기 공급을 비롯한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안 기반의 조작서비스</li> <li>8. 긴급수리시설</li> <li>9. 정박, 계류, 접안서비스</li> <li>10. 컨테이너 처리, 저장 및 창고 보관, 화물운송</li> </ul> <p>이 양허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도로, 철도, 연안 운송 및 관련 보조서비스에 대하여, 복합운송업 자가 해상운송된 국제화물을 연계 운송할 목적 으로 트럭, 철도운송 및 관련 설비를 임대할 권 한을 가지거나 또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 형태의 운송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음.</p>

공급 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항공운송서비스</u>			
항공기 및 부품 유지 및 수선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컴퓨터 예약시스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도로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21 + 71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도로 운송서비스를 위한 승인 필요. 특정 지역 및 노선에 대해 독점 면허 및 수적 할당이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약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화물 운송 (CPC 71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승무원이 포함된 승합차 임대 (CPC 71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육상운송 장비의 유지와 보수 (CPC 6112+886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도로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 (CPC 7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u>H. 운송 보조 서비스</u>			
(b) 저장 및 창고보관 서비스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기타 (CPC 7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 첨 부

### 해상운송에 대한 주석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라 함은 복합운송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항만에 도착한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업자가 적시에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복합운송업자“라 함은 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 상품에 대한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의 발행 당사자로서 본 운송계약에 따른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 운송”이란 석유 탐사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륙붕 위치를 포함하여, 노르웨이의 항만 간 물품 및 여객에 대한 해상운송을 말한다.
2.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체”라 함은 다른 회원국의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해상 운송이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내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통합된 운송 서비스의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국내적으로 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는 국경간 공급 모드 하에서 취한 양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가.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이를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업자 단독이나, 상설 사업활동 체계를 설립한 서비스 판매자와 함께, 운영 또는 제공된다.
-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또한 고객에게 재판매)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취득. 이러한 서비스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하한 형태, 특히 내륙 수로,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돌아오는 운송서비스를 포함한다.
- 다. 운송 서류나 통관 서류, 또는 운송상품의 원산지 및 특성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대한 문서상의 준비
- 라.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정보 상호교환을 포함하는 여하한 수단을 이용한 비즈니스 정보의 제공. (통신 분야의 부속서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

- 마. 여하한 사업활동 체계의 조성 (기업주식에의 참여를 포함)과 국내에 설립된 해운 대리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한 (또는, 외국인력의 경우, 인력 이동에 대한 수평적 양허를 조건으로 함) 인력에 대한 임명
- 바.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될 때 화물을 인수

3. "해상 화물 처리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 선박에 대한 화물의 양적하
- 화물의 묶기/풀기
- 선적 전이나 양하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

4. "통관 서비스" (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라 함은, 이 서비스가 서비스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을 일상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든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라 함은 컨테이너를 채우거나 비우기, 수선 및 선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이나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행동을 말한다.

6.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선사나 해운회사의 사업 이해를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화물을 인수

7. "화물 주선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8.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 서비스"라 함은 화물 중개서비스, 선하증권 검사, 화물요율 정보 서비스, 운송서류준비 서비스, 포장, 나무 상자에 넣기, 포장 풀기, 나무 상자 풀기 서비스; 화물 검사, 무게 측정,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현지 집배도 포함)를 말한다.